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65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소병훈 · 허 영 · 박상혁  
강준현 · 이개호 · 강경숙  
김영진 · 용혜인 · 권향엽  
박 정 · 부승찬 · 진성준  
윤준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제2항에 따라 심리부검을 위탁받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포함하며, 이하 “심리부검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장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의 원장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7. 그 밖에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 ④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부검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라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제12조의3제5항”을 “제12조의3제5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2(심리부검)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제11조의2(심리부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제2항에 따라 심리부검을 위탁받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포함하며, 이하 “심리부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1. <u>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p> <p>2. <u>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역시</u></p>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의 교육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장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  
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  
지개발원의 원장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  
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  
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7. 그 밖에 청소년 관련 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장

④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  
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  
리부검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

<신 설>

<신 설>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 ⑥ (생략)  
<신설>

<신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라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5조(벌칙) ① -----  
-----  
-----.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p>1. <u>제12조의3제5항</u>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u>2.·3.</u> (생략)</p> <p>② ~ ④ (생략)</p>	<p>2. <u>제12조의3제5항(같은 조 제8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u>----- ----- -----</p> <p><u>3.·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